

2008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

I 일반 현황

■ 운영개요

- 근거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구성 : 5명
 - 최 성 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 2007. 6. 1 임명)
 - 신 영 철 (전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정책위원, 2008. 1.14 임명)
 - 이 경 섭 (전 감사원 제5국장, 2008. 6.11 임명)
 - 김 경 수 (전 토대건축사무소 대표이사, 2008. 6.11 임명)
 - 정 재 실 (전 감사원 국장, 2008. 8.18 임명)
- 임 기 : 2년 (1회 연임가능)
- 설치 및 지위 : 시장 소속 하에 두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직무

-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 19세 이상의 시민 1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 시장·시의회가 의뢰하는 사안 및 자치구청장이 요청한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 일정금액 이상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 등에 대한 감사·평가 및 감사·조사 등

■ 지원조직 : 시민감사관팀 8명

- 팀 장 : 1명 (행정 5급)
- 팀 원 : 7명 (6급 4명, 7급 2명, 기능직 1명)

II

감사활동실적

1. 감사실적 총괄

(단위 : 건)

구 분	합계	'08	'07	'06	'05	'04	'03	'02	'01	'00이전
합 계	128	10	13	10	8	9	10	10	9	49
시민감사	59	1	4	4	1	3	2	2	7	35
주민감사	38	7	8	6	5	4	5	1	2	-
직원감사	31	2	1	-	2	2	3	7	-	14

2. 상반기 감사실적

■ 접수 및 처리

구 분	접 수	처 리			비 고
		계	진행 중	완 료	
계	17	20	10	10	
주민감사	14	17	10	7	2007년 접수 3건
시민감사	1	1	-	1	
직원감사	2	2	-	2	

■ 감사결과 조치현황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신분상 조치(명)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계	추 징	환 불	계	고 발	징 계	훈계 등
29	24	5	576,875	499,254	77,621	27	-	5	22

■ 분야별 감사처리현황

계	도 교	시 통	건 주	축 택	토 건	목 설	공 시	공 설	환 경	재 행	무 정	일 행	반 정	기 타
18	-	-	2	-	-	-	2	-	-	-	-	14	-	-

■ 감사 현황

연번	청구일자	대 상 관	청 구 내 용	감사기간	비 고
1	'07.3.29	강북구	◦ 청소용역업체 선정 관련 주민감사	'08.2.2~4.2	완 료
2	'07.11.21	광진구	◦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08.4.14~6.12	완 료
3	'07.12.13	도봉구	◦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08.2.4~4.11	완 료
4	'08.1.4	도봉구	◦ 변전소시설 건축허가관련 주민감사	'08.2.4~4.13	완 료
5	'08.1.11	강북구	◦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청구 포기	완 료
6	'08.3.17	강서구	◦ 마곡동 공장이적지 공동주택 사업 승인 관련 주민감사	-	감사계획 수립중
7	'08.4.25	양천구	◦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08.6.27~8.25	보고서 작 성
8	'08.4.30	마포구	◦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서명중
9	'08.5.1	금천구	◦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08.6.27~8.25	보고서 작 성
10	'08.5.8	동대문구	◦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명 부 접 수
11	'08.5.14	중랑구	◦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명 부 접 수
12	'08.5.23	은평구	◦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서명중
13	'08.6.3	강동구	◦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서명중
14	'08.6.3	구로구	◦ 구로구 공무원 학교운영위원 진출 관련 주민감사	-	서명중

연번	청구일자	대상기관	청 구 내 용	감사기간	비 고
15	'08.6.10	성동구	◦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감사계획 수립중
16	'08.6.19	노원구	◦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감사계획 수립중
17	'08.6.23	서대문구	◦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서명중
18	'08.5.29	시설관리공단	◦ 장애인코택시 노동자 부당해고 관련 시민감사	-	완 료 (각하)
19	서울메트로 서울시 지하철공사		◦ 지하철역사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관련 직권감사	'08.1.17~4.16	완 료
2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주)동원엔터프라이즈		◦ 장충체육관 위·수탁 운영 관련 직권감사	'08.6.10~6.23	완 료

3. 주민감사청구사항 처리내역

1 00구 청소용역업체 선정 관련 주민감사

■ 감사개요

- 청 구 인 : 박○○(00구 미아동 000번지 0호)외 210명
- 청구일자 : 2007. 3. 29
- 대상기관 : 00구청
- 청구요지

000구청장이 청소용역업체 선정업무에 있어 자격미달업체를 선정하는 등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강북구 주민들에게 청소서비스 저하와 예산 낭비의 피해를 주어 감사를 청구함.

■ 감사진행 경과

- 2007. 3.29 : 청구접수
- 2007. 4.26 : 주민감사청구인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보고

- 2007. 4.30 : 감사자문위원회 심의
 - ※ 심의결과 조건부 수리(내사 또는 수사 종결 시 감사 착수)
- 2008. 4.23 : 00지방검찰청 수사종결(관련공무원 무혐의)
- 2008. 6.12 : 수사종결 확인
- 2008. 6. 13 ~ 8. 11 : 감사 실시

■ 감사결과

1. 계약 중단한 청소용역업체인 ○○환경(주)과 새로이 선정된 △△환경(주)이 동일한 업체인지 여부

- △△환경과 ○○환경은 각각 법인의 회사명, 대표이사, 주주 구성 등 형식상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 사무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일치한 사실, △△환경 대표이사 및 이사가 ○○환경의 직원과 대표이사이며, △△환경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인력확보 계획, 장비확보계획 등으로 ○○환경이 법인명의만 바꿔 응모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2. 청소용역업체 선정시 4개 업체가 응모했음에도 계약 중단한 업체(△△환경)를 선정한 경위

- 2006.12.26. 청소용역업체 선정 심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환경 임직원이 △△환경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청소용역업체 선정에 참여하였으나,
- 주민만족도 평가결과로 계약중단 한 업체가 명의만 변경하여 신청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기존 ○○환경의 인원, 장비 등을 인수 받는다는 요약내용만 심사서류에 기재한 채,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환경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시민단체 2명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부터 최고 평점을 받아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되었음.

3. 동일업체 임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구청과 업체간 비리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명요구

- 00구 청소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00경찰서에서 수사를 실시하고, 00구청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서울00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음.
- 업무를 잘못처리한 점은 있으나 위 확인내용과 같이 업체선정에 비리가 있다는 더 이상의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음.
- ➔ 사실상 계약 중단한 업체가 신청한 내용임을 사업자선정위원회에 제대로 보고 하지 않아 동일업체가 선정된 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문책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상 주의조치.

4. 청구내용 이외의 사항

-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결과 부당처리
 - 2005년 『청소대행업체 평가계획』에서 평가점수에 따라 계약기간을 줄이거나 청소대행 구역 1개동을 축소하는 것으로 평가계획 수립하여
 - 2005.6.15~6.25까지 평가한 결과 ○○환경은 평가점수 67.9점으로 대행구역 1개동의 축소에 해당됨에도 여름철에 청소구역을 변경하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사실과 달리 71.1점으로 보고하여 6개월 재계약 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처리.
- ➔ 주민만족도 평가결과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 공무원은 문책하고, 행정상 주의조치
- 폐기물처리업 허가처리시 현장 확인 업무 소홀
 - 2007. 2. 2. ○○환경의 폐기물처리업 처리허가를 처리하면서 ○○환경이 제출한 자가주차장(424㎡)은 소유권은 확보하였으나 노원구 직영 청소차량 차고지의 진·출입로 등이므로 현실적으로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적합한 것으로 허가처리 하였음.
 - ※ 자가주차장 확보 여부는 업체선정 주요 심사항목이며, △△환경은 자가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최고점을 받아 청소대행업체로 선정
- ➔ 현장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문책하고, ○○환경에게 실질적인 자가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시정조치.

● 청소용역업체 소요장비 및 인력확보 부적정

- 2007.11.22 『민간대행구역확대조정 시행계획』 수립하여 직영구역인 1개동을 용역업체에 이관하면서 △△환경으로 하여금 청소차량 1대, 인원 2명을 충원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서도 업체에서 인원 1명만 증원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같은 해 12.18.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

➔ 청소인력 및 장비를 계획대로 충원하지 않고 변경계약을 체결한 관계 공무원은 문책하고, 부족하게 계약된 청소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는 소요장비 및 인력을 재산출하여 확보토록 시정조치

■ 조치내용

● 행정상 조치 : 4건(시정 2, 주의2)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업무 부당처리(주의)
-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결과 부당처리(주의)
- 폐기물처리업 허가처리시 현장 확인 업무 부적정(시정)
- 청소용역업체 소요장비 및 인력 확보 부적정(시정)

● 신분상 조치 : 훈계 5명

● 제도개선 검토과제 : 2건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업무 부당처리(주의)
-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결과 부당처리(주의)

2 광진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감사개요

- 청구인 : 박○○(광진구 000동 000-00)외 284명
- 청구일자 : 2007. 11. 21
- 감사대상 : 광진구청, 광진구의회
- 청구요지

광진구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중 일부가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선정되었음에도 확인작업 없이 위원을 위촉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결정시 주민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를 위반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이므로 감사를 청구함.

■ 감사결과

1.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적정여부

- 광진구의회에서는 심의위원을 선정하면서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2~3배수를 추천받도록 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학계를 제외시킨 채 단수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추천 의뢰하였고,
-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자(신○○ 변호사)의 경우 본인이 직접 결격사유가 있음을 통보해온 후에야 부적격자임을 인지하고 9.27일에 가서야 대한변호사 사무직원협회에 추가로 추천을 의뢰하는 등 각 단체들로부터 추천받은 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조회 등 최소한의 적격성 심사도 하지 않았으며,
- 현 광진구의회 비례대표 ○○○당 2번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조○○ ○○ 변호사 사무직원협회 회장) 및 전직 광진구의회 의원이었으며 현 광진구 출연기관의 임원인 자(이○○ ○○문화원 감사), 4선 국회의원이었으며 현 ○○○당 상임고문인 자(유○○ 21세기 ○○○○연구원장) 등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심의위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 ➡ 심의위원 선정시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하여 적격성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위원을 선정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향후 의정비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각 분야별 복수 이상의 기관에 추천 의뢰하고, 추천된 자들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

2. 의정비심의위원회 설명회 개최 등 운영과정 적정여부

- 소관팀장인 의회법무팀장이 특별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업무숙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영기획팀장에게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여, 대직자도 아닌 경영기획팀장이 2007.10.8(월) 심의회 1차회의에서 사전에 배부된 회의자료에 의거 ‘3쪽에 의정비 지급범위 결정절차가 있고, 4쪽에 관련 규정이 있다’라고 제목 정도만 읽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전설명을 소홀히 하였고,
- 6차례 개최된 회의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법규에 규정된 산출기준을 무시하고, 타 구와의 형평성만을 고려하여 의정비 지급기준을 논의하고 확정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시키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심의회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의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의원 전원이 연서한 “의정비 희망 요구액” 등의 자료는 3차례나 제출한 반면, 정작 심의회가 요구한 “구의원 검직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였음.
- ➡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및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향후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은 심의절차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심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누락 없이 성실히 제공하여 의정비 지급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

3. 주민여론조사 설문서 작성과정 등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 주민여론조사 설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전에 설문조사 문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타 4개 구청(양천·동작·송파·동대문)의 설문문항을 그대로 의정비심의회에 제출하였고,
- 의정비심의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도 없이 일부위원은 최종 설문지 내용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회의가 끝난 후에 위원장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설문지 조사문안을 결정하여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 4번 설문문항에서 “의정비 현실화”라는 비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현재 구의원이 비현실적인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자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작성함.
 - 5번 설문문항은 당초 구청에서 제시한 설문안에 명시된 전년대비 인상률은 삭제시킨 반면, 잠정결정액 5,800만원이 구청 국장의 평균연봉 6,058만원 보다 낮은 금액임을 강조함으로써 응답자가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없도록 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함.
 -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서에 현재 구의원이 지급받고 있는 의정비 액수가 얼마인지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정한 의정비 금액에 대해 묻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설문내용이 부적절하게 작성되었음.
- ➔ 설문조사 문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정비 심의회가 위원장 중심으로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설문서 문안을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시정시키지 않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향후 설문조사는 주민의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3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설문서 조사문안 작성 및 여론조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조치

4. 의정비 69.1% 인상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 2008년도 광진구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심의위원 선정 및 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적법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 하였으며,

- 의정비 잠정지급기준 결정시 법규에 규정된 산출기준을 무시하고, 단순히 타 구와의 형평성만을 고려하여 결정된 금액(인상률은 명시하지 않음)을 가지고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설문서 조사문안을 작성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 의정비 인상은 각종 임금 및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주민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2007년 대비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69.1% 인상한 것은 절차상 위법사항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위반하여 의정비를 인상하는데도 이를 방관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의정비심의위원회 재구성 후, 임금 및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주민 소득 수준,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 잠정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전년대비 인상률 명시)으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비 인상액을 최종 결정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시정조치

5.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208호, 2006.5.10)」에 의하면 50만원 이상의 접대성 경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 기관운영 및 의정운영공동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50만원이상 접대성 경비 3건 2,248천원에 대하여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채 참석인원만을 기재하여 집행하였고,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규정」(행안부 훈령 제 204호, 2006.7.31)에 의하면 의정운영공동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를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사적인 활동과 경비집행의 효과가 의원 개인에게 미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음에도,

- 사적 경비인 경조사비 및 근조화환 구입비로 총 75건 6,777천원을 의정 운영공동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고,
 - 별도의 피복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구의원 체육복 구입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광진구의회 의원들의 등산용 재킷 및 바지 등의 구입비로 총 6,95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또한, 공무국외여행(일본비교시찰)을 실시하는 구의원 6명에 대하여 총 600천원의 격려금을 집행하였음.
- ➔ 향후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예산과목별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 요구

■ 조치내용

- 행정상 조치 : 2건(시정 1, 주의1)
 - 의정비심의회위원회 재구성, 설문서작성 및 여론조사 재실시, 의정비 지급 기준 재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조례개정안 제출(시정)
 -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의정운영공동) 집행 철저(주의)
- 신분상 조치 : 5건(훈계 1, 주의 4)

3 도봉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감사개요

- 청구인 : 홍○○(도봉구 000동 000번지)외 116명
- 청구일자 : 2007. 12. 13
- 감사대상 : 도봉구청, 도봉구의회
- 청구요지

도봉구의회는 2007.12.5. 의정비 인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활동비 월110만원을 제외한 월정수당을 187만원에서 365만원으로 95.19%를 인상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불법 등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감사결과

1.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적정여부

- 도봉구청에서는 2~3배수 추천을 받도록 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1~2 배수로 추천을 받는 것으로 방침을 수립하여 각 단체들로부터 1배수만을 추천받아 적격자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심의위원을 선정하였고,
 - 도봉구의회의 경우 구의회의장단회의에서 8개 분야 16개 단체 중 뚜렷한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구의장의 지시에 따라 당초 대상단체 명단에도 없고 도봉구 관내에 소재하지도 않은 특정 언론단체와 도봉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공정성이 의문시되는 단체들을 선정 추천 의뢰하여,
 - 전직 구의원이자 현 도봉구 의정회 회장과 전직 3선 구의원 등 지방의원과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어 적격성이 결여된 2명의 전직 구의원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함으로써, 심의위원 선정과정이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 ➔ 심의위원 선정시 행정자치부 지침을 위반하여 1배수 위원만 추천 받아 선정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향후 의정비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각 분야별 복수 이상의 기관에 추천 의뢰하고, 사회적 신망과 더불어 심의위원 선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여 심의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조치.

2. 의정비심의위원회 설명회개최 등 운영과정 적정여부 확인

- 도봉구청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결정시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정지급 기준액을 정하고, 잠정 결정된 지급액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등을 설명하지 않았고,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원칙적으로 제3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는 잠정지급 기준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였음.
- 또한, 구청장이 추천한 5명 중 1명(○○여대 이○○ 교수)은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박○○ 변호사는 5차례 회의 중 2차례나 불참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 심의위원회 위원별 발언횟수를 보면 총 703회 발언 횟수 중 80.23%인 564회는 구의회의장이 추천한 심의위원들이 발언하고, 나머지 11.95%인 84회는 구청장이 추천한 심의위원이 발언하였으나 대부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심의위원이 발언한 것으로 볼 때 구청장의 심의위원 추천과정에 문제가 있음.
- ➔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과 관련하여 법령 및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향후 심의위원회 운영은 심의절차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심의위원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의정비 지급기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

3.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여론조사 설문서 작성 적정여부 확인

- 의정비심의회의에서는 당초 구청이 제시한 10개 문항의 설문서 내용 중 핵심항목은 삭제하고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설문서를 작성하였고,
- 응답자들이 구의원의 실제 급여액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의원들이 실제 받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활동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매월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110만원은 제외시킨 채, 월정수당 187만원의 인상액에 대해서만 묻는 설문서를 작성하는 등 공정성과·신뢰성 없는 설문서를 작성하였음.
- ➔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의견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구청제시 설문서 내용 중 핵심적인 항목은 삭제하고,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설문서를 변경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부당한 사항임에도 이를 시정시키지 않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향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설문조사는 주민의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비심의회의는 의정비 잠정지급 기준액만 결정하고 제3의 여론조사기관에서 설문서 작성 및 여론조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조치

4.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 등 주민여론조사 적정여부 확인

- 도봉구 및 도봉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의정비 잠정지급액을 결정하지 않고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유 없이 제3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았고,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여론조사(1,000명)를 실시하면서 미성년자 및 다른 시·도, 자치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 여론조사 참여횟수도 제한하지 않아 한사람이 무한정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론조사 결과 값이 실시간으로 확인되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 값을 가지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였음.

- 한편, 동사무소를 통한 서면여론조사(450명)는 표본추출을 무작위로 하지 않고 대부분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하도록 함에 따라 신뢰도는 다소 떨어지고 있으나 구청홈페이지를 통한 여론조사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임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홈페이지 여론조사 결과와 합산하여 반영함으로써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로 의정비를 인상하였음.
- ➔ 의정비 잠정지급 기준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신뢰도가 전혀 없는 설문조사 결과 값으로 의정비 인상액을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추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향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은 잠정결정한 의정비를 가지고 제3의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조치

5. 월정수당 95.19% 인상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확인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심의위원 선정 및 운영의 적법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 의정비 잠정지급액이 결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문서를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으며,
- 의정비 인상은 각종 임금 및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주민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2007년 대비 특별한 인상요인 없이 95.19% 인상한 것은 절차상 위법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위반하여 의정비를 인상하는데도 이를 방관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의정비심의위원회 재구성 후, 임금 및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주민 소득 수준,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 잠정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으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비 인상액을 최종 결정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시정조치

6. 의정활동비 집행 적정여부 확인

- 의정활동비는 집행 후 정산을 하는 개산급이 아니고,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데 사용하는지 여부는 의원 개개인의 도덕성에 맡겨져야 할 것임
- 따라서 2007년도 도봉구의회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 연 1,3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으나 집행과정의 위반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

7.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집행 적정여부 확인

-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자부 예규 제208호 2006.5.10)」에 의하면 접대성경비를 집행할 때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1인당 3만원 한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의정운영공통) 중 1,132건 144,750천원은 집행목적 및 집행대상이 기재되지 않아 의정활동에 사용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비를 지방에서 27건 2,639천원을 집행하였고,
 -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사적경비인 구의원 가족문상 경비(식대, 교통비) 및 화환구입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3건 835천원을 집행하였음
 - 또한, 공무국외여행을 4차례 실시하면서 여행결과 보고서는 1건만 제대로 제출하고 나머지는 작성되지 않거나 미흡하게 작성되었음
- ➔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명확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 요구

■ 조치내용

- 행정상 조치 : 2건(시정 1, 주의1)
 - 의정비심의위원회 재구성, 설문서작성 및 여론조사 재실시, 의정비 지급 기준 재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조례개정안 제출(시정)
 -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의정운영공통) 집행 철저(주의)
- 신분상 조치 : 4건(경징계 1, 훈계 2, 주의 1)

4 도봉구 변전소시설 건축허가 관련 주민감사

■ 감사개요

- 청구인 : 이○○(도봉구 000 00-1)외 176명
- 청구일자 : 2008. 1. 4
- 대상기관 : 도봉구청
- 청구요지

도봉구 도봉동 소재 ○○○○아파트외 8개 아파트 단지 5천여세대 25,000명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인 도봉동 00-0번지의 건축사업 시행자와 한국전력간 복합변전소분양계획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주에 대하여 건물 신·증축 허가시 도봉구청의 불법행위, 직무유기행위 및 주민위해시설 건립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주민감사를 청구함.

■ 감사결과

1. 건축허가처리시 변전소로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조건부여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처리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1조에 의하면 준공업지역에서는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는 일반목욕장, 의원, 변전소, 골프연습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 도봉동 00-0, 12호의 토지는 준공업지역으로 현행 건축관련법규로는 건축허가부서에서 임의적으로 변전소로 용도변경을 못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됨.
- 다만, 위 토지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산업지원시설”에 한하여 건축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토지일 뿐만 아니라,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변전소·골프연습장은 주민기피시설로 적합하지 않다”고 용도변경신청을 부결시킨 사항이므로
- 토지관리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 건축허가 협의시 “당초 승인조건 이외의 토지이용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를 근거로 “산업지원시설 이외의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2007.6.11 증축허가 신청된 목욕장 및 의원 등의 건물용도는 1998.2.19 유보지 개발계획승인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데도 2006.11.24 건축허가로 이 토지에 부여된 당초의 조건은 완료되었다고 회신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사업계획의 사전결정) 내용을 이행시키지 않은 위법한 회신내용으로 성실한 업무처리라 할 수 없음.

- ➔ 유보지 관리업무 및 건축허가 협의를 잘못된 관련 공무원은 문책 조치

- ➔ 당초 승인 내용인 "산업지원시설"로 허가되지 않은 증축허가 내용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향후 설계변경 및 사용승인시 동 부지는 "산업지원시설" 한하여 사용하도록 조치

2.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이용개발계획(변전소,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부결한 토지인데 증축허가(목욕장)를 받아 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표시변경을 거쳐 합법화 하고자 하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는 사항에 대하여

- 도봉동 00-0, 12호의 토지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산업지원시설"에 한하여 건축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토지일 뿐만 아니라,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전소 및 골프연습장은 주민기피시설로 적합하지 않다"고 부결된 토지라 하더라도

- 건축관련법규상 허용된 범위내의 건물용도로 건축허가가 신청되고, 토지관리부서인 주거정비과에서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협의시 당초 토지에 부여된 조건을 제시(의견)하지 않았다면

- 건축허가 부서에서 건축주가 증축허가를 받은 후 설계변경 또는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 등을 통하여 변전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만을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건축허가시 조건을 붙이지 않고 묵인하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 목욕장으로 증축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후 변전소 등으로 용도변경(표시변경)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는 있겠으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묵인하였다는 것은 입증이 어려우며 이를 근거로 처벌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음.

2. (주)○○모방 00동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유보지 건축허가 협의 회신 부적정

- 00동 00-0, 12호의 토지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산업지원시설”에 한하여 건축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토지로써 (주)○○모방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1998.2.19 이를 승인하여 주었으므로 당초 승인내용을 변경승인하지 않는 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 2006.1.24 토지주(김○○)가 변전소 및 골프연습장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2006.1.27 “당해 토지는 사업승인조건이 부여된 토지로 용도 외 신축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으며,
 - 2006. 11. 13 건축허가 신청시에도 건물용도가 당초 유보지 개발계획서 내용과 부합되어 승인하였으면서도 2007. 6. 11 증축허가신청 시에는 건물용도가 목욕장 및 의원 등으로 당초 유보지 개발계획서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은데도 유보지에 대한 건축협의를 2006.11.13 건축허가신청 시에 협의해준 것으로 사전결정시 부여된 조건은 완료되었다는 잘못된 협의 의견을 회신하여 당초 유보지에 부여된 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하였음.
- ➔ 건축(증축)허가 협의시 유보지에 부여된 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건축허가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해 준 관련 공무원은 문책

■ 조치내용

- 행정상 조치 : 3건(시정 2, 권고1)
 - 당초 승인 내용인 “산업지원시설”로 허가되지 않은 증축허가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시정토록 조치
 - 설계변경 및 사용승인 시 동 부지는 “산업지원시설” 한하여 사용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도록 시정조치
 - 유보지는 “산업지원시설” 이외에 토지 용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함
- 신분상 조치 : 징계 1명, 훈계 2명, 주의 2명

5 강북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감사개요

- 청구인 : 최○○(강북구 00동 000-000)
- 청구일자 : 2008. 1. 11
- 청구요지

강북구 의회는 2007. 11. 23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19,644천원에서 41,750천원으로 대폭인상하여, 주민들의 비판과 행자부로부터 28,430천원으로 하향조정 권고를 받고도 40,550천원으로 결정하는 등 강북구민에게 불이익을 끼쳐 감사를 청구함.

● 청구내용

- 의정비 심의위원 자격미달 및 여론조사 실시 부적정
- 의정운영공동업무추진비 과다집행
- 2007년 캐나다 및 일본 해외연수 비용 과다지출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확인 요망
- 의정활동비를 활동내역 및 영수증 처리없이 개인사비로 사용
-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400만원을 구민 세금으로 부당하게 지불
- 2006~2007년도 국내여비 비용과 내용이 맞지 않고 내용이 관광성임
- 업무추진비 내역과 참가위원 확인 요망

■ 감사진행 사항

- 대표자 증명서 및 위임증 교부 : 2008. 1. 16
- 감사 청구인이 강북구의회 의장단과 협의하여 감사청구 포기함.

6 강서구 마곡동 공동주택 사업승인 관련 주민감사

■ 감사개요

● 청구인 : 서○○(강서구 000)외 200명

● 청구일자 : 2008. 3. 17

● 청구요지

강서구청에서는 마곡동 0-0외 7필지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계획 사업승인을 처리함에 있어 사업부지내 포함된 공장이적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없이 위법하게 승인처리하여 감사를 청구함.

● 청구내용

- 사업부지내에 포함된 00동 0-0 소재 건축물은 제조업을 영위했던 사업장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별표1-3에 의한 공장이적지에 해당되어 동조례 제35조 제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조 3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건립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한 사업승인의 위법여부
- 상기의 사항에 대한 진정서 처리의 적정 여부

■ 감사진행 사항

● 청구인 명부 접수 : 2008. 7. 3

● 감사자문위원회 심의 : 2008. 8. 12

※ 심의결과 : 수리

● 2008. 8. 20 현재 감사계획 수립 중

7 양천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감사개요

● 청구인 : 김○○(양천구 00동 000-3)외 266명

● 청구일자 : 2008. 4. 25

● 청구요지

양천구의 의정비 54% 인상이 의정비 인상기준에 맞게 적정하고 적법한지 여부, 주민 설문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청구함.

● 청구내용

- 의정비 인상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과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양천구의회에서는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인상하였으며, 의정비 인상에 따른 처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나 토론 등 필요한 내용을 생략하고 일사천리로 조례를 졸속 처리하였으므로,

- 의정비 54% 인상이 기준에 맞게 적정하고 적법하게 인상되었는지 감사를 요청

● 감사기간 : 2008. 6. 27 ~ 8. 25

● 감사대상 : 양천구청, 양천구의회

● 감사주관 : 000 시민감사옴부즈만

■ 감사진행 사항

● 현지감사 실시 : 2008. 7. 10 ~ 7. 16

● 감사종료 보고 : 2008. 7. 31

● 2008. 8. 20현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중

8 마포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감사개요

- 청구인 : 김○○(마포구 창전동)
- 청구일자 : 2008. 4. 30
- 청구요지

마포구의회는 2007.10.29. “마포구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2008년 마포구의회 의원 의정비를 전년도 연 37,830천원에서 45% 인상한 연 55,000천원으로 의결한 사안에 대해 마포구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관계자들의 적지않은 불법 및 위법의 의혹이 있기에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를 시정하고 올바른 의정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구함.

● 청구내용

-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과정에서 잠정지급기준액을 명시하지 않고 인상 항목만을 명시하는 등 적절치 않은 주민여론조사 실시 및 인상안 최종 결정시 그 결과에 전혀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된 이유와
-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의 위법의혹과 의정비 결정기준의 위법, 집행부의 숙지의무 태만 등 심의회 운영 및 과정의 부적정한 점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

■ 감사진행 사항

- 대표자 증명서 및 위임증 교부 : 2008. 5. 6
- 2008. 8. 20현재 서명 중

9 금천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감사개요

● 청구인 : 안○○(금천구 000동 000-00)외 296명

● 청구일자 : 2008. 5. 1

● 청구요지

금천구의회가 2007.12.14일자로 통과시킨 조례개정(의정비 인상)과 관련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절차나 방법의 적법성 여부 및 주민 여론조사의 적정성, 의정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방청신청과 관련한 구의회의 위법성, 재정자립도나 주민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금천구에서 월정수당 130% 인상이 적정하고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청구함.

● 청구내용

- 구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의 절차나 구성, 주민여론조사(설문조사, 인터넷 설문), 의정활동비(월 110만원) 집행의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
- 2007.12.14일 구의회 방청신청과 관련한 사항, 월정수당의 130% 인상의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

● 감사기간 : 2008. 6. 27 ~ 8. 25

● 감사대상 : 금천구청, 금천구의회

● 감사주관 : 000 시민감사옴부즈만

■ 감사진행 사항

● 현지감사 실시 : 2008. 7. 21 ~ 7. 25

● 감사종료 보고 : 2008. 7. 31

● 2008. 8. 20현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중

10 동대문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감사개요

● 청구인 : 방○○(동대문구 휘경1동)

● 청구일자 : 2008. 5. 8

● 청구요지

동대문구 의회가 2007. 12. 10자로 통과시킨 조례개정(의정비 인상)과 관련하여, 잠정 지급액을 결정하지 않은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고,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심의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상향 결정 하였으며, 의정활동비(월 110만원) 집행의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 아울러 4천만원 이하가 적절하다는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월정수당을 무려 77.6%나 인상한 것이 과연 적정하고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함.

● 청구내용

- 2007.12.10 의정비 인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통과함에 있어, 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각종 여비 등을 제외하고도 월정수당이 189만원에서 335만원으로 오르게 되었으며,
-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상한액) 결정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물가상승율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고, 공청회나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여론조사가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의 여부 등

■ 감사진행 사항

● 대표자 증명서 및 위임증 교부 : 2008. 5. 16

● 청구인 명부 접수 : 2008. 8. 14

● 2008. 8. 20현재 청구인명부 열람 준비중

11 중랑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감사개요

- 청구인 : 정○○(중랑구 면목4동)
- 청구일자 : 2008. 5. 14
- 청구요지

중랑구 의회는 2007. 12. 21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였는 바, 월정수당을 16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전년대비 93.75%) 인상한 것이 적정하고 적법한 지에 대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함.

● 청구내용

- 의정비 지급기준 설문조사 결과 많은 주민이 3,500~4,000만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고 심의위원회도 4,900만원을 최종 결정하였으나 시의회에서 5,040만원으로 조례 통과되었는데,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결정 절차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었는 지, 그리고 주민 설문조사가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진행되었는 지의 여부
- 2006~2007년도 중랑구 월평균 가계소득은 약236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자치구 중 23위에 불과하고 중랑구 의회 의원들은 조례 발의 건수가 최하위로 의정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는데 월정수당을 93.75% 인상한 것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할 때 그 인상폭이 적정·적법한 지의 여부 등

■ 감사진행 사항

- 대표자 증명서 및 위임증 교부 : 2008. 5. 19
- 청구인 명부 접수 : 2008. 8. 14
- 2008. 8. 20현재 청구인명부 열람 준비중

12 은평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감사개요

● 청구인 : 홍○○(은평구 갈현동)

● 청구일자 : 2008. 5. 23

● 청구요지

의정비 인상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정활동실적과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의회는 은평구민의 평균소득-295만원(2005년도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고, 의정비 인상에 따른 처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나 토론 등 필요한 내용을 생략하고 졸속처리하였는 바 감사를 청구함.

● 청구내용

- 구의원 의정비 65% 인상의 적정·적법 여부

- 설문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그 기준에 근거하여 인상되었는지의 여부 등

■ 감사진행 사항

● 대표자 증명서 및 위임증 교부 : 2008. 5. 28

● 2008. 8. 20현재 서명 중

13 강동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감사개요

- 청구인 : 이○○(강동구 둔촌2동)
- 청구일자 : 2008. 6. 3
- 청구요지

강동구 의회는 2007. 11. 2 의정비 인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의정활동비와 여비 등을 제외하고 동월정수당이 129만원에서 340만원으로 인상율이 164%에 달하고 있으나 조례개정안의 처리과정에 적지 않은 불법 의혹이 있어 주민감사를 청구함.

● 청구내용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 주민 여론조사(설문조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 월정수당 164% 인상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 의정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 감사진행 사항

- 대표자 증명서 및 위임증 교부 : 2008. 6. 12
- 2008. 8. 20 현재 서명 중

14 구로구 공무원 학교운영위원 진출 관련 주민감사

■ 감사개요

- 청구인 : 하○○(구로구 구로본동)
- 청구일자 : 2008. 6. 3
- 청구요지

구로구청장이 공문으로 공무원을 학교운영위원으로 추천(의뢰)한 것은 직무범위를 넘어선 월권 행위로서, 공무원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은 사적인 일로 연가(조퇴, 외출) 사유이나 아무런 처리 없이 임의로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복무위반이며, 공무원의 집단적인 학교운영위원으로의 진출로 인한 업무공백이 예상됨으로 이는 시정되어야 함.

● 청구내용

- 공무원을 학교운영위원으로 추천한 구로구청의 위법성 여부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구청 공무원의 복무위반 여부

■ 감사진행 사항

- 대표자 증명서 및 위임증 교부 : 2008. 6. 9
- 2008. 8. 20현재 서명 중

15 성동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감사개요

- 청구인 : 정○○(성동구 행당2동)외 326명
- 청구일자 : 2008. 6. 10
- 청구요지
 - 의정비 심의위원 선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행자부 지침에 따라 의정비 인상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 대상이라는 회신과 함께 명단만 공개 하였는 바, 이에 대한 의혹을 밝혀주기 바라며
 - 여론조사의 과정, 방법 등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반영 되었는지 등 의정비 인상 전반에 관한 감사 청구
- 청구내용
 -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 사전 여론조사(ARS)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의 적정성과 적법성
 - 의정비를 76%(의정비 포함) 인상한 것이 적정하고 적법한 것인지 등

■ 감사진행 사항

- 청구인명부 접수 : 2008. 7. 23
- 감사자문위원회 심의(심의결과 : 수리) : 2008. 8. 12
- 2008. 8. 20현재 감사계획 수립 중

16 노원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감사개요

- 청구인 : 서○○(노원구 중계본동)외 227명
- 청구일자 : 2008. 6. 19
- 청구요지

노원구 의회가 2007.12.12일 통과시킨 조례개정(의정비 인상)과 관련하여 주민여론조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함.

● 청구내용

- 주민여론조사와 관련 설문조사 표본의 적정성 여부, 추출 과정과 방법의 적정한지, 설문조사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고·홍보되었는지 여부와 설문조사 내용의 적정성 및 설문조사 결과가 의정비 인상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구청장, 구의장의 추천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및 의정비 책정과 관련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유무와 적정성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감사하여 노원구 의회가 월정수당을 84%를 인상한 것이 적정하고 적법한지 여부

■ 감사진행 사항

- 청구인명부 접수 : 2008. 7. 15
- 감사자문위원회 심의(심의결과 : 수리) : 2008. 8. 12
- 2008. 8. 20현재 감사계획 수립 중

17 서대문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감사개요

- 청구인 : 신○○(서대문구 00동 000-00)
- 청구일자 : 2008. 6. 23
- 청구요지

서대문구 의회는 2007. 12. 11 의정비 인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확정 하였던 바, 2008년도 의정비는 5,27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42 만원을 인상하는 과정 중 적지 않은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주민감사를 청구함.

● 청구내용

-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및 운영의 적절성 여부
- 주민여론조사(설문조사)의 적정성과 결과반영 여부
- 의정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 의정비 148%인상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 감사진행 사항

- 대표자 증명서 및 위임증 교부 : 2008. 6. 30
- 2008. 8. 20현재 서명 중

4. 시민감사 처리내역

1 000콜택시 노동자 부당해고 관련 직권감사

■ 감사개요

● 청구인 : 신○○(영등포구 000동 000-0)외 251명

● 청구일자 : 2008. 5. 29

● 청구요지

000콜택시 노동자들은 2003년부터 서울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일해 왔으며 2005년 행정법원으로부터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공단은 2007년까지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2007년 조합원을 중심으로 10분 지각과 복장불량 등으로 해고하였으며,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판정을 받은 노동자를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의 취지와 어긋나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해고함.

● 청구내용

- 시설관리공단의 000콜택시노동자 부당해고 및 위·수탁 계약심사의 부당성
- 시설관리공단의 000콜택시노동자 부당해고 등 노동탄압에 따른 예산 낭비
- 000콜택시 노동자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대책미비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2003년부터의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에 관한 사항

■ 감사진행 사항

● 감사자문위원회 심의 : 2008. 6. 27

● 심의결과 : 각 하

※ 심의일 현재 동일 사안으로 소송 등이 진행중에 있어 각하 처리됨.

5. 직권감사 처리내역

1 지하철역사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관련 직권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 감사기간 : 2008.1.17 ~ 4.16(현지감사 : 기간 중 12일간)
- 감사주관 : 000, 000, 000 시민감사옴부즈만

■ 추진경과

- 감사계획 수립 및 통보 : 2008.01.10
- 수감기관 연석회의 개최(기술정보 교환회의) : 2008.01.28
- 감사종합보고 : 2008.04.16
- 이의신청 : 2008.05.16~2008.05.20

■ 주요 지적사항

【서울메트로】

-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등 5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미징수
-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등 5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설치사업 책임감리 부적정
- 신제품인증(NEP)제품 의무구매 비율 적용 부적정(주의)
- 1~2차 민자유치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및 PSD설치 사업비 협상 부적정
- 충무로역 리모델링 민간투자사업 PSD설치비 원가적용 부적정(시정)

【도시철도공사】

- PSD 설치공사 사업비 계약심사 미의뢰
- PSD 설치공사 관련 소방시설(스프링클러헤드) 미설치
- PSD 설치공사 입찰방식 변경으로 예산낭비

- 지하철 7호선 20개 역사의 PSD 설치공사 공정관리 부적정
- PSD 설치공사 신공법(슬림화·모듈화·국산화) 시공으로 예산절감 효과 미흡
- 지하철 5호선 방화역 등 스크린도어 시험운전 관련 안전요원 배치 계약 부적정

■ 조치내용

- 행정상 조치

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계	시정	주의	행정처분	소계	시정	주의	행정처분	소계	시정	주의
11	7	3	1	5	3	1	1	6	4	2

- 재정상 조치

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비 고
499,254,320원	499,254,320원	-	지체상금 추정

- 신분상 조치

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계	주의	경고	징계	소계	주의	경고	징계	소계	주의	경고	징계
13	1	9	3	9	-	6	3	4	1	3	-

■ 감사개요

● 감사배경

○○○○농구연맹에서 2008. 3. 11부터 3. 17까지 장충체육관을 이용하였는데, 위탁업체인 (주)○○엔터프라이즈의 전기사용료 과다청구가 원인이 되어 시민감사청구 후 취하 하였으나 전기료 등의 분야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 되었을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여 감사실시

● 감사대상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및 (주) ○○엔터프라이즈

● 감사기간 : 2008.6.10 ~ 6.23

● 감사주관 : 000 시민감사옴부즈만

■ 주요 지적내용

- 체육관 대관 사용자에게 대한 전기료 과다 징수 [44,446천원]
- (주)○○엔터프라이즈의 직영업체인 헬스클럽 등의 전기료를 일반 대관 사용자에게 전가(轉嫁)[30,323천원]
- 『냉·난방 및 기계설비』 가동에 따른 기계사용료 과다 징수 [14,160천원]
- 『냉·난방 및 기계설비』 가동 시 기계사용료 징수근거 없이 임의 징수
- 공공사용자(서울시)에 대한 입장료 등 과오 징수 [2,000천원]
- 체육관 전용사용료 과다 징수 [1,607천원]
- 관람료 납부자에 대해 환경시설관리비를 부당 징수 [3,995천원]
- 공연장 외의 시설에 대한 재해대처계획 미신고
- 대관사용료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대체 납부할 권리 미고지

■ 감사결과

- 재정상 조치 : 119건, 107,944천원
 - 환 급 : 118건, 77,621천원
 - 환급 불가 : 1건, 30,323천원
- 행정상 조치 : 10건 (시정 6, 주의 1, 개선 3)
- 신분상 조치 : 2명 (주의 2)

III 청렴계약 활동실적

■ 분야별 활동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입 회	감 시	비 고
청렴계약	24	23	1	

■ 감시활동 내역

연번	구 분	활동내용	참석자	비 고
1	· 도시기반시설본부 (2008.06.25)	- 마포구종합행정타운 건설공사 · 설계변경 부적정 ·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기간 연장	박형채, 최성권 신영철, 김경수 이경섭 (자문위원 1명)	자료 분석 및 조사중

■ 입회활동 내역

연번	구 분	활동내용	참석자	비 고
1	· 업체선정 심사위원 위촉시 감시(참관) (마케팅담당관, 1.28)	- 2008 해외언론초청 프레스투어 및 외신대상 마케팅 업체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선정시 공정성·투 명성 확보위해 감시(입회)	최성권	
2	· 제안서 심사위원 추천 (마케팅담당관, 2.20)	- 2008 해외 종합마케팅대행사 매스미디어 분야 1차 PT 심사위원 추천	신영철	
3	· 제안서 심사시 감시 및 심사위원 추천 (마케팅담당관, 2.21)	- 2008 해외 종합마케팅대행사 매스미디어 분야 1차 PT 심사시 감시 및 2차 PT 심사위원 추천	박형채	

연번	구 분	활 동 내 용	참석자	비 고
4	· 제안서 심사시 감시 (마케팅담당관, 2.22)	- 2008 해외 종합마케팅대행사 매스미디어 분야 2차 PT 심사시 감시	박형채	
5	· 제안서 심사위원 추천 (마케팅담당관, 2.25)	- 2008 해외 종합마케팅대행사 뉴미디어 분야 PT 심사위원 추천	박형채	
6	· 제안서 심사시 감시 및 심사위원 추천 (마케팅담당관, 2.26)	- 2008 해외 종합마케팅대행사 뉴미디어 분야 PT 심사시 감시 및 옥외미디어 분야 PT 심사위원 추천	박형채	
7	· 제안서 심사시 감시 (마케팅담당관, 2.27)	- 2008 해외 종합마케팅대행사 옥외미디어 분야 PT 심사시 감시	박형채	
8	· 설계적격심의 감시(참관) (기술심사담당관, 3.12)	-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 일괄입찰 설명회 및 기술위원 선정 시 공정성·투명성 확보위해 감시	박형채	
9	· 설계적격심의 감시(참관) (기술심사담당관, 3.27)	-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 일괄입찰 기술위원회 개최시 공정성·투명성 확보위해 감시	신영철	
10	· 설계적격심의 감시(참관) (기술심사담당관, 4.7)	-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 일괄입찰 평가위원 추천시 공정성·투명성 확보위해 감시	신영철	
11	· 설계적격심의 감시(참관) (기술심사담당관, 4.8)	-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 일괄입찰 평가위원 선정 및 기술· 평가위원 합동위원회 개최시 공정성·투명성 확보위해 감시	신영철	
12	·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및 객관적 평가시 감시(참관) (디자인기획담당관, 4.24)	- 서울디자인올림픽(SDO) 2008 행사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위원 선정 및 객관적 평가시 공정성· 투명성 확보위해 감시(입회)	최성권	

연번	구 분	활 동 내 용	참석자	비 고
13	· 제안가격 평가 및 주관적 평가시 감시(참관) (디자인기획담당관, 4.25)	- 서울디자인올림픽(SDO) 2008 행사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가격 평가 및 주관적 평가시 공정성·투명성 확보 위해 감시(입회)	박형채	
14	· 설계적격심의 감시(참관) (기술심사담당관, 4.14)	-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공사 일괄입찰 설명회 및 기술위원 선정시 공정성·투명성 확보위해 감시	신영철	
15	· 설계적격심의 감시(참관) (기술심사담당관, 4.29)	-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5공구 건설공사 일괄입찰 기술위원회 개최시 공정성·투명성 확보위해 감시	박형채	
16	· 설계적격심의 감시(참관) (기술심사담당관, 4.30)	-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건설공사 일괄입찰 기술위원회 개최 시 공정성·투명성 확보위해 감시	박형채	
17	· 설계적격심의 감시(참관) (기술심사담당관, 5.1)	-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7공구 건설공사 일괄입찰 기술위원회 개최 시 공정성·투명성 확보위해 감시	신영철	
18	· 설계적격심의 감시(참관) (기술심사담당관, 5.6)	-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5공구 건설공사 일괄입찰 평가위원 추천시 공정성·투명성 확보위해 감시	박형채	
19	· 설계적격심의 감시(참관) (기술심사담당관, 5.7)	-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건설공사 일괄입찰 평가위원 추천시 공정성·투명성 확보위해 감시	박형채	
20	· 설계적격심의 감시(참관) (기술심사담당관, 5.8)	-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7공구 건설공사 일괄입찰 평가위원 추천시 공정성·투명성 확보위해 감시	신영철	
21	· 설계적격심의 감시(참관) (기술심사담당관, 5.7)	-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5공구 건설공사 일괄입찰 평가위원 선정 및 기술·평가위원 합동위원회 개최시 공정성·투명성 확보위해 감시	최성권	

연번	구 분	활 동 내 용	참석자	비 고
22	· 설계적격심의 감시(참관) (기술심사담당관, 5.8)	-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건설공사 일괄입찰 평가위원 선정 및 기술·평가위원 합동위원회 개최시 공정성·투명성 확보위해 감시	박형채	
23	· 설계적격심의 감시(참관) (기술심사담당관, 5.9)	-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7공구 건설공사 일괄입찰 평가위원 선정 및 기술·평가위원 합동위원회 개최시 공정성·투명성 확보위해 감시	신영철	

IV 민원배심제 활동실적

■ 실적 총괄

(단위 : 건)

구 분	계	기 각	조정·중재	비 고
민원배심법정	4	2	2	

■ 활동 내역

연번	일 자	안 건	결정내용	비 고
1	2008.4.21	· 동대문운동장철거에 따른 입주상인지원 계획 부당	이해설득 (기각)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2	2008.4.28	· 경춘제2구역 녹지지역 해제요구	결정연기	푸른도시국 조경과
	2008.5.19	· “경춘제2구역 녹지지역 해제요구” 결정 배심	이해설득 (기각)	
3	2008.5.7	· 국민주택특별공급아파트 평형결정 부당	사실 재조사	주택국 주택정책과 구로구
		※ 구로구에서는 관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함.		
4	2008.5.26	· 토지구획사업 청산금이자부과 부당	결정연기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2008.6.4	· 토지구획사업 청산금이자부과 부당	인 용	